

#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이 문서는 '장애인차별 금지법' 관련  
 웹접근성을 준수하기 위한  
 "사본 PDF" 문서입니다.

제7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일 시	2017.4.27.(목) 10:00
		장 소	본부관 311호
참석위원	정승렬(위원장), 이호선, 김인준, 이태준, 전수빈, 김민주, 김태호 (이상 7명)		
업무지원	재무팀간사 : 조 준 / 서무 : 안정민		
	<2016 회계연도 결산 내용 보고> - 신승철(재무팀장), 정정현(재무팀 대리)		
불참위원	없음		
의 제	201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의결		

## ◎ 회의내용

### 1. 개회선언

#### ■ 위원장

- 재적 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2017학년도 7차 등록금심의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오늘 회의 안건은 2016회계연도 결산 심사 및 의결임. 2016회계연도 결산(안)은 앞서 외부회계감사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쳤으며, 학생대표위원이 결산(안)과 관련하여 사전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린 바 있음.

### 2. 2016학년도 결산 심사·의결

#### ■ 위원장

-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총무처장님의 설명이 필요한지 아니면 곧바로 질의응답을 진행해도 되는 지 위원들의 의견을 구함.

■ **위원일동**

- 별도의 설명 없이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모두 동의함.

■ **학생 측 대표위원**

- 일부 질의 사항은 이미 대학평의원회에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이 있을 수 있으나, 대학평의원회 구성원이 아닌 위원분들도 있고, 무엇보다 완벽한 결산자료를 위해 꼼꼼하게 질의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수강료수입을 보면 2016학년도 본예산에 약 15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추경에서 122억원으로 감소하였으며, 결산 결과 약 119억원의 수입으로 책정됨. 2017학년도 예산 편성 시에도 작년과 동일하게 150억원의 수강료수입을 예측하였는데 어떤 목표가 있는 것인지 질의함.

■ **간 사**

- 수강료수입의 대부분은 평생교육원 수입이며, 중국 학생 유치를 통해 수입 증대를 목표로 하였음. 그러나 사드 배치 등 국제 정세 변화로 K-POP 관련 과정에서 학생 모집이 부진하고 일부 과정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본예산 책정 금액보다 수입이 감소하였음. 평생교육원에서는 2017년에도 2016년과 같은 학생 유치 목표를 세웠으며 이에 따라 예산 편성을 한 것임.

■ **학생 측 대표위원**

- 대학평의원회에서 평생교육원 수입이 줄어들고 있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음.

■ **학교 측 대표위원**

- 최초 예산 대비 추경 수입 금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며, 실제로 지난 3년간 평생교육원 수입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 **학생 측 대표위원**

- 2015회계연도에는 경상비 전입금 예산을 3억5천만원으로 책정하였으나 실제 2천만원이 전입되었으며, 2016년 결산에는 경상비전입금이 전혀 없는데 이에 대해 질의함.

■ **재무팀**

- 법정부담전입금 42억 중 실제 법정부담금으로 지출된 금액은 41억1천4백만원이며, 그 외 6백만원은 경상비전입금이라고 볼 수 있으나, 모두 합산하여 학교 수입으로 처리하여 경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어 모두 법정부담전입금 수입으로 처리하였음.

■ 학생 측 대표위원

- 자산전입금 계정이 결산서에 나타나있지 않음. 추가 캠퍼스 확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학생들은 자산전입금을 통해 법인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 대학교육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는 2014년 자산전입금을 통해 자산적 지출의 21%를 처리하고 있다고 함. 법의 취지에 따르면 제반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법인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 학교 측 대표위원

- 자산전입금을 상시적으로 전입하고 있는 대학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며, 한국외국어대학의 경우에도 대학 내부 필요에 따라 2015학년도에만 한시적으로 전입한 것으로 보임.

■ 학생 측 대표위원

- 모든 학교 시설물에 대해서는 법인의 책임도 있는 것이므로 실제로 자산전입금 항목에 금액이 없더라도 결산서에 계정을 기재함으로써 법인에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함.

■ 학교 측 대표위원

- 법인의 자산 보유 수준에서 현재 최대한 투명하게 노력하고 있으며, 자산이 많음에도 전입을 적게 하거나 여건이 비슷한 타 대학에 비해 전입 금액이 적은 것은 아님.

■ 재무팀

- 당초 본예산에 금액이 없었고 전년도에도 발생한 바가 없기 때문에 기재를 안한 것이며, 경상비전입금은 2015회계연도에 있었기 때문에 2016년엔 금액이 없었음에도 기재하였음.
- 법인회계 계정과목에도 자산전출금 항목이 있기 때문에 법인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을 것임.

■ 외부 전문가 위원

- 실제로 계정과목 중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많으며, 회계 상 전기와 당기에 금액이 없으면 통상 생략하는 것이 관례임.

■ 학생 측 대표위원

- 계정과목을 결산서에 표기함으로써 추가 캠퍼스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일정 부분 법인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임.

- 예산이나 결산에 드러나지 않는 계정과목은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법인이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결산서에 계정과목을 기재하는 것을 제안함.

■ **학교 측 대표위원**

- 결산 관련 정보를 사학진흥재단에 공시할 때는 모든 계정과목이 드러나게 되어 있으며, 법인의 투자 문제는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 **학생 측 대표위원**

- 교수, 직원뿐만 아니라 법인도 대학의 구성원이므로 캠퍼스 확충과 관련한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함.
- 2016학년도 결산서에 자산전입금을 명시하지 못하는 것인지 질의함.

■ **학교 측 대표위원**

- 2017년에 진행하는 사업과 관련한 문제로 2016학년도 결산서에 해당 계정과목을 표기해달라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외부 위원의 설명대로 회계 상으로도 맞지 않음.

■ **학생 측 대표위원**

- 국고보조금 수입 중 지방자치단체 부분과 관련하여 최근 은평구와 ‘지역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지원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질의함.

■ **간 사**

- 본 사업은 지자체에서 직접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지 않고 노하우가 많은 대학과 협약을 맺고 강좌를 개설, 운영하는 사업임. 우리 대학의 시설을 활용하는 것은 아니며 지원금은 산학협력단 회계에 계상됨.

■ **학생 측 대표위원**

- 교비회계 수입으로 들어오면 학교에 더 바람직할 텐데 산학협력단 회계로 편입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함.

■ **학교 측 대표위원**

- 대부분의 연구과제와 국고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은 산학협력단 회계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임.

■ **학생 측 대표위원**

- 2016학년도 추경 예산 대비 교육훈련비 예산이 6천만원정도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를 투입하여 이를 충당한 것으로 설명하였는데 추경 편성 시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는지 질의함.

■ 재무팀

- 교수세미나에 대한 추가 경비가 소요된 것이며, 세미나 개최 여부와 참석 인원 변동 등에 따라 변수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학생 측 대표위원

- 교수세미나는 통상 방학 때 진행되는 것으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항인데 추가 비용이 소요된 것이 의문임. 정부에서 회계연도 말에 지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듯이 잔여 금액을 소진하기 위한 지출이 아닌 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임.

■ 학교 측 대표위원

- 대학 상황에 따라 확정되지 않은 교수세미나가 발생할 수 있음.

■ 학생 측 대표위원

- 난방비가 예산 대비 약 1억3천만원 정도 미집행되었는데 노후 건물에는 아직도 냉난방이 안되는 곳이 많아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람.

■ 학교 측 대표위원

- 난방은 대부분 중앙난방 방식으로 일정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난방이 필요함에도 절약을 위해 좁게 운영한 것은 아님. 예년보다 따뜻한 날이 많았던 것도 미집행 발생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임.

■ 학생 측 대표위원

- 난방비 명목으로 책정 후 발생한 잔액은 난방비 명목으로 차년도에 사용가능한지 질의함.

■ 학교 측 대표위원

- 2017학년도 본예산에 난방비를 적정하게 예상하여 반영하였으며,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추경 때 추가편성 할 수 있음.

■ 학생 측 대표위원

- 대학교육연구소에서 발표한 <사립대 소모성경비 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 대학이 많은 소모성 경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교육여건지출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해 질의함.

■ 간 사

- 소모성경비와 교육여건지출을 산출할 때 특정 계정과목만 선정하였는데 이는 자의적인 기준으로 보이며, 예를 들어 소모성경비에 소모품비 계정은 빠져있으며, 교육여건지출이라고 주장하는 실험실습, 기계기구 계정과목에도 소모성경비가 다수 존재하고 있음.

■ 학교 측 대표위원

- 다소 자의적인 구분에 따라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 우리 대학의 교육비 환원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학생 측 대표위원

- 이와 관련 우리 대학의 동아리 연합회 지원금이 타 대학에 비해 매우 부족함을 지적하고자 함. 특히, 우리 대학은 동아리 수가 많은 편임에도 지원금이 적음.

■ 학교 측 대표위원

- 몇 년간 동결된 등록금액이 대학 간에 상이한 상황에서 동아리 지원금을 타 대학과 절대 수치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비율로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학생 측 대표위원

- 교내장학금이 본예산 대비 약 7억5천만원 덜 집행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함.

■ 학교 측 대표위원

- 장학금 수혜 자격이 되는 학생은 모두 받을 수 있는 규모를 예측하여 예산을 책정하지만 실제 적용 과정에서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학생들이 있는 경우에는 차액이 발생할 수 있음.

■ 학생 측 대표위원

- 교내장학금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지, 미지급된 장학금은 차년도에 이월되는 것인지 질의함.

■ 간 사

- 매년 최소한 장학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일부 장학금의 경우 차년도로 이월되기도 함.

■ 학생 측 대표위원

- 결산 자료에 따르면 학생지원경비를 약 4억원정도 덜 사용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 질의함.

■ 재무팀

- 학생지원경비에는 다양한 세목이 있으며, 여러 부서에서 조금씩 미집행된 금액이 합산되어 산출된 것임.

■ 학생 측 대표위원

- 교내장학금과 학생지원경비에서 본예산 대비 지출 잔액이 발생한 주요 내역에 관한 자료를 작성해 주시기를 요청함.
- 투자유가증권 발생이 정기예금이라고 설명해 주셨었는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질의함.

■ 재무팀

- 해당 상품은 예금보다 금리가 높지만 원금을 보장하기 때문에 정기예금으로 처리하였으나, 올해 4월 외부회계감사 결과 투자유가증권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항목을 옮긴 것임.

■ 외부 전문가 위원

- 1년 이내의 예금은 유동자산에 포함되나 1년이 넘는 장기 상품이거나 별도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투자와 기타자산으로 옮기게 되는데, 외부회계감사에서 이러한 이유로 권고한 것으로 보임.

■ 학생 측 대표위원

- 그렇다면 투자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지, 해당 금액을 설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함.

■ 재무팀

- 정기예금보다 더 높은 금리를 받기 위해 일정 금액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것임.

■ 학교 측 대표위원

-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느냐를 투자의 기준으로 본다면, 무위험 상품이므로 투자라고 보기는 어려움.

■ 학생 측 대표위원

- 결산 자료에 따르면 2016학년도 예산에도 투자유가증권 금액이 책정된 것으로 나

오는데, 외부회계감사 이전에는 정기에금으로 처리하였다면 당초 예산에 투자유가 증권 항목에는 금액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닌지 질의함.

■ 외부 전문가 위원

- 당초 본예산에는 예금 항목에 책정되어 있었을 것임.

■ 재무팀

- 2016학년도 본예산에는 예금으로 책정하였으며 결산과정에서 외부회계감사 의견에 따라 항목을 수정변경한 사항임.

■ 학생 측 대표위원

- 올해 초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투자목적 자산 보유 여부를 질의하였을 때는 투자목적 자금이 없다고 답하였는데 결산 과정에서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학생 측에서 실망이 컸음.

■ 재무팀

- 정보공개 청구 당시에는 해당 상품을 정기에금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올해 4월 감사 의견에 따라 수정, 변경하여 처리한 것임. 당시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이라 함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 주식, 사채, 국공채 등을 투자목적으로 소유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상품은 투자유가증권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임.

■ 학생 측 대표위원

- 투자유가증권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학교 측에서 이러한 상품이 있다고 알려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함.

■ 학교 측 대표위원

- 정보공개청구는 대학 구성원뿐만 아니라 제3자도 가능한 것이므로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공개해야하는 것임.
- 따라서 등록금심의위원회 내에서는 공개할 수 있는 정보라도 정보공개청구로는 공개가 어려울 수 있음.
- 학생 측에서 요청한 교내장학금 및 학생지원경비 관련 사항은 학생처에서 작성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음.

■ 위원장

- 그밖에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추가 질의사항이 있는지 확인함.



■ **위원일동**

- 추가 질의사항 없음.

■ **위원장**

- 이상으로 2016학년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며, 참석위원 전원이 동의하였음을 확인함.

**3. 심사·의결사항**

- 2016 회계연도 결산(안)을 참석위원 전원이 동의하여 의결함.

**4. 폐회선언**

- 이상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심사·의결을 종료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함.  
끝.

2017. 4. 27.

국민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